

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·조제 추진방안

□ 추진배경

- 재택치료 체계 도입 후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도 대리인(공동격리자, 지인 등) 수령 원칙 유지 중
 - 신속항원검사(RAT) 양성 시 확진자 인정(3.14~),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(병원급 신청 3.30~, 의원급 신청 4.4~) 등으로 의약품 대면 수령 요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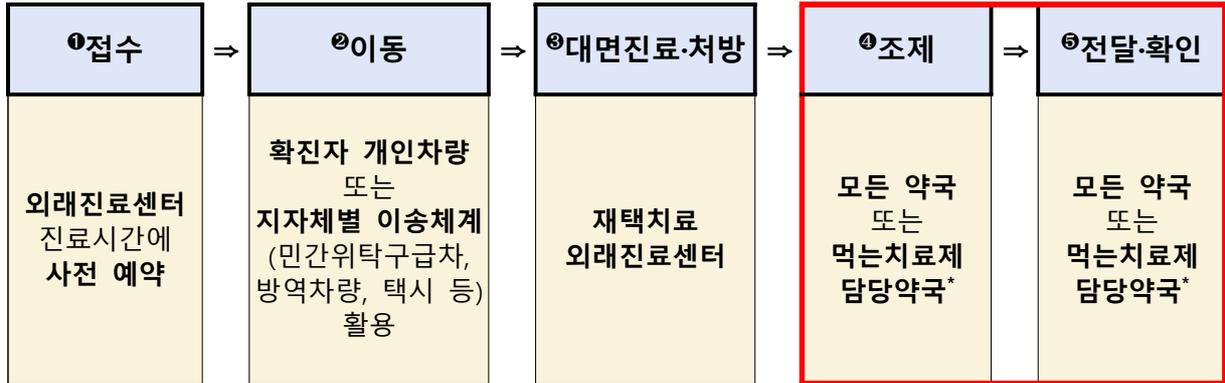
□ 추진방안

- (주요 내용)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대면·비대면 진료 후 처방 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*
 - * “의약품 수령”의 경우도 현재 외래진료와 동일하게 필수 목적의 외출로 허용
 - ** 비대면 진료 후의 처방의약품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되,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가능
 - 약국은 「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약품 대면 전달
- (수령 절차)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 제출* 원칙
→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 조제·전달 및 복약지도(구두·서면 모두 실시하되, 비대면 유선 가능)
 - *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 가능.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
- (지원 방안) 확진자가 직접 의약품 수령 시 코로나19 관련 수가* 지원
 - * 본인 수령 시 대면투약관리료 6,020원, 대리인 수령 시 투약·안전관리료 3,010원

참고1

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대면 처방·조제 절차

<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대면 처방·조제 절차 >



*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)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·전달이 가능하며,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hira.or.kr)에서 확인 가능

① **(조제)** 처방전* 수령시 **확진자 여부, 수령인이 확진자 혹은 대리인인지 여부, 본인부담금 대상 여부를 확인**하고, 처방전에 따라 적정 용량 조제

* 처방전 '조제시 참고사항'란에 H/재택치료, T/외래진료센터 코드가 기재된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대상

- 처방전은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수령하여 약국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

※ 환자가 희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으며, 환자 또는 대리인은 의약품 수령 시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

② **(전달)** 약국에서 **환자에게 복약지도(비대면 유선 가능) 및 의약품 전달***

* 약사는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를 항상 착용하며, 필요시 일회용 장갑, 안면보호구 등 착용

- 환자가 직접 대면 수령 시 「**코로나19 관련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**」을 준수하여 의약품 전달

③ **(복약지도)** 서면과 구두 모두 실시

* (서면) 복약지도서·설명서 등 동봉, (구두) 약 전달 전후 환자에게 실시(비대면 유선 가능)

④ **(폐기방법 안내)** 복약지도시 잔여 의약품이 발생한 경우 소독처리 후 밀봉하여 격리기간 동안 보관 → 격리 해제 후 일주일 이내에 인근 약국 또는 보건(지)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*에 배출하도록 안내

* 기타 지자체별 폐의약품 수거방식 활용 가능

참고2

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비대면 처방·조제 절차

1 기본사항

- ① (전달방식)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, 지인 등 대리인 수령 원칙
 -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하거나,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전달
 - * 예외적으로 1인가구, 가족 모두 확진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 전달
- ② (전달비용)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 운영비 예산, 행안부 특교세(2.8 교부),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

2 조제·전달 절차

- ① (조제)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* 수령시 확진자 여부, 본인 부담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처방전에 따라 적정 용량 조제
 - * 처방전 '조제시 참고사항란'에 H/재택치료, T/외래진료센터 코드가 기재된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대상
- ② (전달) 약국에서 담당하여 처방 당일 신속 전달
 - ①환자에게 대리인 수령 원칙으로 약국에서 수령하도록 안내*, ②대리인 신분을 확인**하고 연락처, 수령서명 등 수령인 정보 기록
 - * 공동격리자가 대리인으로 수령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
 - ** 환자와의 유선 통화, 신분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
 - 대리인 수령 불가 시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대면 수령*하거나 약국에서 지자체가 결정한 방식으로 전달
 - * 환자가 직접 대면 수령 시 약국에서 「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
- ③ (복약지도) 서면과 구두 모두 실시
 - * (서면) 복약지도서 등 동봉, (구두) 유선 등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실시
- ④ (수령 확인)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, 문자 등으로 확인
- ⑤ (폐기방법 안내) 복약지도서 잔여 의약품이 발생한 경우 소독처리 후 밀봉하여 격리기간 동안 보관 → 격리 해제 후 일주일 이내에 인근 약국 또는 보건(지)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*에 배출하도록 안내
 - * 기타 지자체별 폐의약품 수거방식 활용 가능